



광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 G 보

제41호 2026. 10. 14.(수)

입법예고

광양시 공고 제2026-2173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75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81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83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86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96호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 1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6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4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3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36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8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6-262호
광양시 고시 제2026-263호
광양시 고시 제2026-264호
광양시 고시 제2026-265호
광양시 고시 제2026-266호
광양시 고시 제2026-267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58
하천점용허가 고시 60
하천점용허가 고시 61
하천점용허가 고시 62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63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65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6-2170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85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94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97호
광양시 공고 제2026-2199호

도로지정공고 67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 사용)
허가 고시(공고) 69
도로지정공고 70
2026년 3/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72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 · 사용)
허가 고시(공고) 96

회 람										
--------	--	--	--	--	--	--	--	--	--	--

▶ 발행 : 광양시 ▶ 편집 : 홍보소통실 (☎797-2713, 행정2713)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1. 규정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광양시 CCTV 운영협의회」 최근 3년간 미개최로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CCTV 운영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27조)

- CCTV 운영협의회 회의 개최 필요 시 구성할 수 있다.
-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한다.
-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운영협의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 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8. ~ 10. 28.(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안전과 재난상황팀, 전화: 061-797-1913, FAX: 061-797-2593, E-mail: hsj9704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의 참고사항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061-797-1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광양시 CCTV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운영협의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 및 영상정보 보호 등을 위해 CCTV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u>설치·운영하여야 한다.</u>	제27조(운영협의회 구성운영) ① ----- ----- ----- <u>구성할 수 있다.</u>
② 운영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u>한다.</u>	② ----- --- <u>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u>
③ (생략) <u><신 설></u>	③ (현행과 같음) ④ <u>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
④·⑤ (생략)	⑤·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⑥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u>	⑦ <u>운영협의회는 안전심의를 할 때마다 구성하고, 해당 안전심의가 끝나면 해산한다.</u>
⑦·⑧ (생략)	⑧·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광 양 시 장

1. 개정이유

- 2026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한 시세 감면사항 중 취약계층 지원, 문화재 보존 계승, 농어촌 산업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감면기한을 3년간 연장하고자 함.

2. 관계법령

관계 법령	관련 조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의한 감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지역특산물생산단지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시각장애인 자동차 감면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문화재 감면

3. 주요내용

- 감면기한 연장: 2026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3년 연장)
- 기한 연장 대상



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제2조제1항)

- (대 상)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중 기존 시각장애인 4급*에 해당자
- (내 용) 본인 명의 또는 그 직계혈족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1대)의 자동차세 100% 감면
- (필요성)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 강화

② 문화재에 대한 감면(제4조제1항)

- (대 상)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내 용) 재산세 50% 감면
- (필요성) 문화재 보존하여 활용함으로써 향토문화 계승과 발전

③ 지역특산물생산단지에 대한 감면(제5조)

- (대 상)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내 용)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필요성) 지역특산물 육성을 통한 농어촌 주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

④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제7조)

- (대 상)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 입주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 (내 용)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필요성) 농공단지 입주 지원을 통한 농촌지역 산업 활성화

4. 일부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2. (21일 간)

6.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 방법 : 직접방문(서면), 팩스, 전자우편

라.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광주특별시 광양시 시청로 33, 세정과(우 57785)

- 전 화 : 061-797-3281

- 팩 스 : 061-797-2580

- 전자우편 : hwaaajeong@korea.kr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신·구조 대비표 포함)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붙임 2)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광양시 시세 감면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감면) 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		-----		
한 장애인” 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		-----		
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		-----		
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		-----		
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하		-----		
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하		-----		
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1. · 2. (생략)
- ② ~ ④ (생략)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전라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

-----2029년 12월 31일-----
-----.

- 1. · 2.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① -----

----- 2029년 12월 31일 -----

-----.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9년 12월 31일-----



1. · 2. · 3. (현행과 같음)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 양 시 장

1. 조례명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계획』에 따라 농업기계 예약제에 맞추어 기존 운영 중인 조례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전부개정 하고자 함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예약제,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용료 반환 및 감면에 대한 사항 세분화를 위한 관련 조례 전부개정으로 동 조례 제정 목적 실현함.



3. 주요내용

-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임대자격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예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임대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사용료, 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제11조)
- 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등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전부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기술보급과장, 전화: 061-797-3378, FAX: 061-797-2596, E-mail: bdlm8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 붙임 1. 규제영향분석서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3.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4. 현행조례 1부. 끝.



규 제 영 향 분 석 서

1.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전부 개정	등록단위	내용심사
	성격별분류	기 타	유형/구분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기술보급과	제안부처	기술보급과
	담당부서	기술보급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기술보급과 과 장 지방농촌지도관 이은희(797-2525) ○ 기술보급과 팀 장 지방농촌지도사 김 훈(797-3787) ○ 기술보급과 주 무 관 지방공업주사보 임병덕(797-3378)		
4. 근거법령명 등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농업기계 임대 신청자 등)			
6. 규제존속기한	○ 조례의 개폐 시까지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붙임”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전부개정조례안 참조			
8. 규제체계도	○ 해당없음			



2.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 임대 농업기계 계약 사항을 위반해도(안전수칙 미준수, 임대기간 미준수, 고장기계 원상복귀 미이행 등) 미온적인 기존 조례로는 제재 실효성이 떨어짐
- 농업인의 임대 농업기계의 수요가 지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계약 사항 위반 농업인도 함께 증가하고, 이것은 농업기계임대사업 민원의 주요한 원인임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임대계약사항을 미준수한 임차인 때문에 성실한 임차인들까지 농업기계 임대 지연 및 불가로 농번기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 (현행안) 1차 경고, 2차는 3개월간 임대를 제한
 - 장점: 해당없음
 - 단점: 실효성 없음(농가당 농업기계는 특정시기 1회성 사용되므로 경고 및 3개월 임대 제한을 받더라도 위반자가 사실상 다음번 임대는 지장이 없게됨)
- 대안선택사유
 - 실효적인 방안으로 임대인의 농업기계 사용 주인의식을 높이기 위함
 - 성실한 다수 농업기계 임대 신청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혼란을 방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해당없음

2-3. 피규제자에 미치는 영향

- 직접 피규제자: 농업기계 임대 신청자
- 영향내용
 - 명확한 기준 제시로 성실의무 향상

2-4.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 경쟁제한적 요소 없음

- 해당없음

3.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 임대차 계약관계에서의 성실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규제 신설이 타당함.

3-2.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피규제자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3-3. 규제집행의 실효성 : 해당없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 등의 농업기계 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며, 농업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
2. “임대사업”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대용으로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를 농업경영체 등에게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임대사업장”이란 임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5. “운송서비스”란 시장이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임대사업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소: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
2. 분소: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



② 시장은 지역 여건, 수요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분소 또는 보관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임대사업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필요한 농업기계 전문인력과 예산·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임대사업장에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임대 농업기계 안전사용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교육, 수시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며 교육 시기, 방법,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새로운 농업기계를 도입할 때에는 지역, 작목, 성별에 따른 작업 특성, 안전성 및 편의성 등을 반영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사업의 범위) 임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대용 농업기계의 임대
2. 임대용 농업기계의 안전사용 교육
3. 보유·관리하는 농업기계의 정비 및 보관
4. 그 밖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대자격 및 우선순위) ① 농업기계의 임대 자격은 광양시 내의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경작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2.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서 「농지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말·체험영농을 하는 자
3. 광양시 외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법인 등 농업경영체

② 시장은 예약이 아닌 당일 임대신청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적용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 2에 따른 우선대상자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3.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4.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착기, 스kid로더 등)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가진 자에 한하여 임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공익적 공동작업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임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면허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제7조(예약제 운영) ① 농업기계 임대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예약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임대사업장에 방문하여 예약할 수 있다.

② 당일 임대신청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출고가능한 임대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③ 예약의 접수, 배정, 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 되도록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재해복구, 병해충 방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특정 농업기계에 대한 동일인의 연속 또는 반복 예약으로 독점 사용의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예약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임대신청 방법 및 사용 허가) ①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은 사용예정일 10일 전부터 4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약을 통한 임대신청의 방법은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당일 임대신청은 제7조제2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농업기계의 종류, 사용 목적, 유지보수 상태, 안전사용 교육 이수 여부 및 농번기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④ 시장은 임차인이 고령이거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해당 농업기계를 직접 운전 또는 조작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가족 등 대리 사용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대리 사용자의 범위, 지정 절차,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임대기준) ① 임차인은 시장의 사용 허가 조건에 동의하고, 1인 또는 1개 농업경영체당 1일 1종 1대를 기준으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영농 규모, 작업 공정 또는 기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총 5대의 범위에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임대기간은 농업기계의 출고 시각부터 24시간을 1일로 산정하고, 공휴일을 포함하여 최대 3일 이내로 한다.

③ 임대기간의 연장은 대기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고 예정시각 4시간 전까지 1회 1일씩 최대 2일의 범위에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 임대기간은 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임대기간의 연장 방법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⑤ 임대기계는 입고 예정시각 내에 임대사업장으로 입고되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운송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농업기계를 임대받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농업기계는 사용료 납부를 확인한 후 출고한다. 다만, 연장 사용료는 입고 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사용료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전자결제수단 등을 통하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좌이체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기종별 사용료는 시장이 매년 고시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1. 임대사업장의 휴무 등 운영 사정으로 입고 예정시각에 임대 농업기계를 입고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3. 임대 농업기계 자체의 결함이나 고장 등 정상적인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임차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시장이 재난복구, 병해충 방제 등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6.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경우 감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반환 기준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⑦ 정당한 사유 없이 입고기한을 초과하여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 제한은 별표 2에 따른다.

제11조(운송서비스 및 운송료)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사전 예약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와 별도로 편도 1km당 1,000원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운송서비스는 임차인에게 농업기계를 전달하거나 임차인의 입회 또는 동의하에 농업기계를 회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③ 운송서비스의 대상 임대 농업기계, 운송 예약, 신청, 변경 및 취소방법, 운송지역, 인수·인계 절차 및 제한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시장은 운송인력 및 장비, 도로 여건, 기상 상황, 안전상 위험 등으로 운송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임차인 및 대리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임차인 또는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대리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고 및 입고 시 담당 직원과 함께 임대 농업기계를 조작하거나 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상호 확인할 것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임대 농업기계를 관리하고, 광양시 내에서 농업용으로만 사용할 것
3. 관계 법령, 안전수칙 및 시장의 안내사항을 지킬 것
4.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5. 정상적인 마모 또는 소모성 부품은 제외하고 입고 시 원상회복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임대사업장에 입고할 것
6. 사용 후에는 청결히 세척하고,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할 것
7. 고장, 사고 또는 그 밖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에게 신고할 것
- ②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대인 및 대물 피해는 임



차인 또는 대리 사용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13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임대제한) ①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임대 농업기계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일정 기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 제한의 세부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임대 농업기계를 파손·망실하거나 그 밖에 임대사업장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손해배상액은 수리비, 부품비, 운반비 등 손해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적인 산정기준 및 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로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5조(출고·입고 점검 등) 시장은 농업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대장 등)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실적, 사용현황, 수입금, 정비이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7조(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심의)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광양시 농업·농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다.

1. 임대사업의 운영방향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안전사용 교육 및 안전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
3. 임대 농업기계 불용 및 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광양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임대신청, 사용허가, 사용료 징수, 손해배상, 임대제한 및 그 밖의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농업기계 사용료 산정기준(제10조제4항 관련)

1.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15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감경 비율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3. 농산물 선별기 중 콕정선기의 경우에는 사용시간, 처리물량 또는 사용방식 등을 고려한 별도의 사용료 기준을 시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별표 2]

임대제한 기준(제13조제1항 관련)

1. 임대 농업기계 세척이 불량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5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10일 제한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고 및 입고 기한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3.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일 및 예약시각에 출고하지 않는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0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0일 제한
4. 출고 시 기준 연료량으로 보충하지 아니하고 입고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5일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1개월 제한
5. 안전수칙 위반으로 수시교육 또는 특별교육 통보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2개월 제한
6. 안전수칙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안전장치를 훼손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7. 임대 농업기계를 자동차전용도로 등에서 운행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8. 임대한 농업기계를 허가 없이 관외로 반출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9. 임대한 농업기계를 영리 영업 등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전대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0.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를 신청한 경우
 - 가. 1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 나. 2회 이상 위반 시: 6개월 제한



11. 임대 농업기계의 부품을 허가 없이 탈착했거나 개조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2. 사용료, 연장 사용료 및 운송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체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13. 임대한 농업기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망실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나. 2회 이상 위반 시: 1년 제한

비고

제4호, 제5호,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사유가 사후에 해소된 경우 시장은 위반 정도, 변상 여부 및 공익상 필요성을 고려하여 임대제한을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제정) 2007.07.04 조례 제 731호

(일부개정) 2008.11.26 조례 제 931호

(전부개정) 2011.03.30 조례 제1072호

(전부개정) 2015.11.25 조례 제1395호

(일부개정) 2016.11.14 조례 제1462호

(일부개정) 2019.10.02 조례 제168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를 임대해줌으로써 농가의 경영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하 “임대사업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본소(발작물 임대사업장 포함): 광양시 봉강면 인덕로 1169-20(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내)
2. 분소(동부): 광양시 진상면 지원길 16(진상면 농업인상담소 내) [전문개정 2019.1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란 광양시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업기계"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3. "사용료"란 임대 농업기계의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양시로부터 농업기계를 대여받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업기계의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농업기계화사업의 촉진 및 농업기계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3. 농업기계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에 관한 사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 ①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은 해당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 ② 임대사업장 수입금은 수입일 다음 날까지 광양시 금고에 입금해야 한다. 다만, 수입일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 근무 개시 일에 입금해야 한다.
- ③ 임대 농업기계의 파손·내구연한경과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처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대체 농업기계를 구입해야 한다.
- ④ 시장은 새로운 기종의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지역별, 작목별 작업 여건 등을 고려하고 농업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
- ⑤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기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신청 등)

- ① 농업기계를 임차하고자 하는 사람은 농업기계 임차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 제출해야 한다.
- ② 농업기계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③ 시장은 농업기계 임대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1. 농업기계 사용요령 사전교육

2.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 확인 및 점검

- ④ 농업용 소형 중장비(굴삭기·스키드로더·지게차 등)는 관련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임대해야 한다. <개정 2019.10.2.>

제7조(사용자 및 임대기준 등)

- ① 사용자는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서 관내에 농경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내에 경작지가 있는 경우에는 관외에 주소를 둔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
- ② 임대기준은 임대신청 순서에 따라 1농가에 기종별 1대를 기준으로 하며,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용기간 연장은 임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사용허가 기간은 해당 농업기계의 출고 시간부터 24시간 이내 까지를 1일로 한다.
- ⑤ 임대 농업기계는 사용자가 직접 기계 점검과 시운전을 한 후 이상이 없을 때 대여한다.
- ⑥ 임차 하고자 하는 농업기계를 보유한 농가의 사용신청 및 영업을 목적으로 한 사용 신청으로 판단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제8조(운반서비스 신청)

- 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 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10.2.>]

제9조(운반서비스 운영)

- ①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
- 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편도 1km 당 1,000원으로 한다.
- ④ 운반 기종은 1톤 차량에 상차할 수 없는 기종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소형 굴삭기
 - 2. 소형 트랙터-31
 - 3. 스키드로더
 - 4. 스피드스프레어
 - 5. 승용 이앙기
 - 6. 원거리 방제기
 - 7. 중형 트랙터



8. 퇴비 살포기(궤도)

9. 퇴비 살포기(승용)

10. 잔가지파쇄기 [본조신설 2019.10.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10.2.>]

제10조(사용료 등)

①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하며 매년 초에 시장이 고시한다.<개정 2019.10.2.>

② 임대 농업기계 사용료는 기종에 따라 1일(2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입 인증기 날인방식으로 징수한다.

③ 임차 사용 후 반환 일에 임대 농업기계를 반납하지 않는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④ 농업기계 임대에 따른 운반비용, 유류대 등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임대 농업기계 사용 중 파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회복 후 반납해야 한다. 다만 소모성 부품은 제외한다. [제8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10.2.>]

제11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제9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10.2.>]

제12조(사용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임대 농업기계를 사용한 경우

2.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체납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2019.10.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10.2.>]

제13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임차기간 중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대여 후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사고 시에는 변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1. 14.> [제11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2019.10.2.>]

제14조(농업기계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가 임대 농업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0.2.>

② 사용자는 임대 농업기계 임차기간 종료 후 깨끗이 청소 하여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19.10.2.>

③ 다음 각 호를 위반한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개월간 농업기계 임대를 제한한다. <개정 2019.10.2.>

1. 청소 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 받은 경우
2. 임대 농업기계 파손 후 수리하지 않고 반납한 경우
3. 제1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삭제 <2019.10.2.>

[제12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0.2.>]

제15조(사용료 감면)

① 농업기계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상자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가 5,000원 이하인 농업기계는 감면하지 않는다.

1. 사회적 기업, 국가유공자, 장애인 : 사용료 2분의1 감경
2. 재해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용료 면제

[제13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0.2.>]

제16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임대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양시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15조에 따른 광양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이를 대행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회의 내용을 광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4조에서 이동<2019.10.2.>]

[중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10.2.>]

제17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19.10.2.>

1. 농업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9.10.2.>
3. 삭제 <2019.10.2.>
4. 폐 농업기계 및 내구연한이 도래한 농업기계 처리방안
5. 제1호,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시장이 임대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에서 이동<2019.10.2.>]

제18조(시행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2019.10.2.>]

부칙(전부개정 2015. 11. 25. 조례 제1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 중인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6. 11. 14.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1호, 201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의 사용료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1. 자치법규명 :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파크골프장 이용 민원 해소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파크골프장 관리방식을 市 직영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른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파크골프장 운영시간 및 휴장
- 파크골프장 사용허가 및 제한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및 감면
- 파크골프장 사용료 반환 및 손해배상
- 파크골프장 시설설치 및 관리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2. ~ 2026. 11. 1.(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재

5. 제정조례안: 별첨

6. 의견 제출

-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6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직접 방문(서면), 팩스, 우편, 전자우편

라. 의견제출할 곳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성황도이로 66-22(체육과)
- 전 화 : 061-797-3904
- 팩 스 : 061-797-3797
- 전자우편 : lhj7757@korea.kr

※ 우편(전자우편) 제출 시 의견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조 례 명: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 성명 (단체명):
 - 주 소:
 - 연락처:

조례안 내용	찬·반 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관광문화환경국 체육과), 061-797-39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양시 파크골프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파크골프장”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파크골프 시설과 그 밖의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란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내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시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파크골프장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 범위와 명칭 등) ①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파크골프장에 적용한다.

② 파크골프장의 명칭·위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운영시간) ① 파크골프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절기(5월부터 9월까지): 06:00부터 19:00까지
2. 동절기(10월부터 4월까지): 07:00부터 18:00까지
3. 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

② 시장은 기상 여건 또는 적정한 유지관리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휴장)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5월 1일
3. 설날 및 추석 명절 당일
4. 잔디 보호 또는 시설의 개수·보수·점검이 필요한 경우
5. 호우·강풍·폭염·한파 등 기상 여건 악화로 안전에 위험이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 허가) ① 파크골프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파크골프장을 질서있고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용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전용 사용은 광양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단체가 체육경기 또는 체육활동을 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⑥ 파크골프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⑦ 연간사용권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크골프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 및 체육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취사, 음주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사용료)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2에 따라 파크골프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③ 사용료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전용료

가. 사용 개시일 5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

나. 사용 개시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전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한 경우: 전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라. 천재지변 또는 휴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

2. 연간사용료: 연간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와 취소 신청일이 속한 날까지 이용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설을 훼손하면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신청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시설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스포츠복지 실현 및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하여 파크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들이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파크골프 활성화와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수칙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파크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이용수칙 등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양시 동네체육시설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 중 “그라운드골프장, 파크골프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양시 파크골프 활성화 및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파크골프장 명칭 및 위치(제4조 관련)

연번	명 칭	위 치	규 모
1	동천 파크골프장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132 일원	36홀
2	선샤인 파크골프장	전라남도 광양시 도이동 846번지	18홀
3	섬진강둔치 파크골프장	전라남도 광양시 진월면 월길리 2번지	18홀



[별표 2]

파크골프장 사용료(제9조 관련)

구 분	내 용			비 고
일일사용권	시민	오전 또는 오후	2,000원	
	관외자	오전 또는 오후	5,000원	
연간사용권	시민	개인	오전 또는 오후	100,000원
		단체	오전 또는 오후	60,000원
전용료	평일	4시간	80,000원	
	공휴일	4시간	120,000원	

1. “시민”이라 함은 사용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에 의거 광양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사용권”을 이용하는 자가 경기 도중 중단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정산 반환하지 아니한다.
3. “관외자”는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예약 및 접수는 예약시스템으로만 가능하다.
4. “연간사용권”이란 광양시민에게 1년 단위로 발급하는 사용권을 말한다.
(단, 단체는 모든 인원이 광양시민으로 이루어진 20명 이상으로 한다.)
5. **“연간사용권”은 “별표 3”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6. “연간사용권”은 광양시 전체 파크골프장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은 오전 또는 오후 중 1회로 제한한다.
7. “전용료”는 4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1시간 초과 시마다 25%를 가산한다.
(단, 18홀을 기준으로 한다.)
8. 사용료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9. 그 밖에 사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별표 3]

사용료의 감면(제10조 관련)

구 분	감면율 (할인율)	비고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100%	
○ 시의 스포츠마케팅 시책 일환으로 유치한 전지 훈련팀에 제공하는 경우	100%	
○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100%	
○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100%	
○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회 (월례회, 정기대회 등 단체 경기 및 행사)	100%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50%	
○ 아래 법률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50%	



파크골프장 전용 사용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법인·단체명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명			
사 용 기 간	년 월 일	시부터	(일)	
	년 월 일	시까지	(시간)	
감 면 종 류	100% 감면 (), 50% 감면 (), 감면 없음 ()			
감 면 사 유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 사용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광 양 시 장 귀하				



파크골프장 전용 사용 허가서

신 청 자	주 소				
	단 체 명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사용허가 내역	시 설 명				
	사용기간	년 월 일	시부터	(일간)	
		년 월 일	시 까지		
사 용 료	사 용 인 원				
	금 원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 사용 허가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광 양 시 장 (인)					



〔 별지 제3호 서식 〕

파크골프장 연간사용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남/여)	
	주 소			(전화번호:)	
	※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납부금액	금 원		납부확인		

「광양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파크골프장 연간사용권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광양시민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사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사용·제공 동의서

- ① 신청자는 광양시 파크골프장 연간사용권 신청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사용을 통해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미동의 시 신청인이 해당서류 직접 제출)
- ② 광양시 파크골프장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수집·사용·제공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목적: 광양시 파크골프장 연간사용권 등록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사용기간: 동의일로부터 연간사용권 사용기간까지
 -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사용·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광양시 파크골프장 연간사용권 등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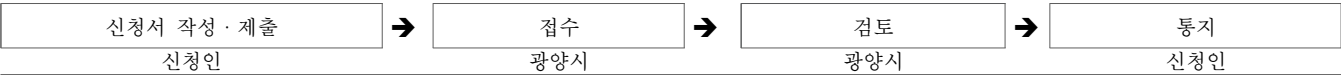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사용 동의 여부	개인정보 수집·사용·제공 동의 여부	정보제공 동의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연간사용권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사용은 1일 1회 오전 또는 오후로 제한한다.
-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 파크골프장 시설관리, 자연재해 등 사유 발생 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파크골프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 양 시 장

1. 규정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지원금 지급을 통한 시민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 조례 제명 및 명칭변경
 - 사회·경제적 위기를 재난의 범위에 포함하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 지원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 명확화, 지원금 지급 중지 근거 신설



4.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6. 10. 13. ~ 11. 2.(20일간)
- 예고방법: 시보, 누리집 게재

5.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6. 의견 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참조: 안전과 안전기획팀, 전화: 061-797-2557, FAX: 061-797-2593, E-mail: toru222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7.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안전과(☎061-797-25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규 정 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연 락 처: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광양시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광양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을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으로 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재난”이란”을 ““재난 등”이란”으로 하고, “재난을”을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긴급재난생활비”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를
 ““지원금”이란 재난 등이”로 하고,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를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지급되는 지원금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역화폐”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중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제4조 중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지원금 지급”으로 한다.

제5조 중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을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로 하고, “지급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지급”을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및 제3호”를 삭제 하며,

같은 조 제2호 “제31조”를 “제10조제2호”로 하고, “광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를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광양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광양시장”을 “시장”으로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을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로 하며, “광양시민”을 “시민”으로 하고, “지원”을 “지급”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긴급재난생활비는”을 “지원금은”으로 하고,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의 제목 “환수 조치” 를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로 하고,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광양시장” 을 “시장” 으로 하고,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광양시 <u>긴급재난생활안정</u> 지원 조례	-----<u>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u>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광양시민에게 긴급재난생활안정 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u>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광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u>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u>재난</u>”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u>재난</u>을 말한다. 2. “<u>긴급재난생활비</u>”란 <u>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u>	제2조(정의) ----- -----. 1. “<u>재난 등</u>”이란 ----- ----- <u>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시민에게 생활의 어려움을 주는 상황을 ---.</u> 2. “<u>지원금</u>”이란 <u>재난 등이 -----지급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등으로써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광양시장은 긴급재난생활비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생활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는 광양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가. 긴급재난지원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나. 민생회복지원금 : 사회·경제적 위기로 생활의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지원금

3. “지역화폐”란 「광양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4. “지급기준일”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금의 지급을 위하여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확정한 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원금

지급-----

--.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

지원금 지급-----

-----.

제5조(지원대상) 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지급할 수 있다.---
-----지원-----
-----.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광양시에 주민등
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광
양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
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
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광
양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 설>

제6조(지원 등) ① 광양시장은 사
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생활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광양시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생활비는 지역경제 활
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삭
제>-----

2.----- 제10조제2호----- 영
주자격을 취득하고 광양시에 체류
지를 두고-----

<삭 제>

4.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로서 광
양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금을

----- 시민-----지급--

②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 현
금, 현물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
금의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
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환수 조치) 광양시장은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긴급재난생활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7조(지원 중지 및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지역

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으로

지급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

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

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 고시

광양시 중동 1294번지 일원 광양 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3차)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1. 사업의 명칭

- 광양시 중동 1294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사업

2. 사업주체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중마로 334-1번지
- 상호명 및 대표자 : 광양중마주공지역주택조합 대표 이주훈

3. 사업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중동 1294번지 일원
- 사업부지면적(대지면적) : 22,877.6㎡

4. 건설주택의 규모

- 건축면적 : 4,630.1272㎡
- 연 면 적 : 95,086.6210㎡
- 세 대 수 : 575세대
- 공급형별 : 66㎡(52) 84㎡(381) 110㎡(142)
- 공급방식 : 조합

5. 변경사항

- 건축적 변경: (당초) 4,628.8247㎡, (변경) 4,630.1272㎡ (증 1,3025㎡)



- 연면적 변경: (당초) 95,129.6568㎡, (변경) 95,086.6210㎡ (감 43,0358㎡)
- 주요 변경사항
 - 단위세대 벽체 변경
 - 비내력 벽체 일부 130T→120T변경
 - 경량벽체 일부 신설, 화장실 비내력벽 → 조적벽체 변경
 - 화장실 모듈화(면적 변경 일괄 적용)
 - 지하1층 주차장, 지붕층 램프1 구조 변경
 - 램프 경사보 부재 단순화 및 시공정밀도 확보
 - 지하주차장 램프2 주차통로 폭(6.5M) 확보 위해 주차구획 재배치
 - 전기차 주차구획2대 이동, 확장형 1대 → 경형 1대 변경
 - 지하주차장 램프3 기초 변경 줄기초 → 매트기초
 - 지하주차장 구조 변경 시공성 향상 및 구조 실시설계에 따른 변경
 - 부대시설(관리사무소) 평면 레이아웃 변경
 - 화장실 배관 공사 시공성 고려 위치 변경
 - 어린이집 구조 기초 일부 변경
 - 매트하중 고려 및 시공성 향상에 따른 변경
 - 옥외 엘리베이터 O.H 높이 변경 H 4,550 → H 4,850
 - 104동 분리수거함 위치 변경
 - 소방차 주차구획 증가로 인한 단지 내 도로, 지상 교통 체계 변경
 - 조경 특화 설계 및 실시 설계에 따른 세부 변경
 -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관련 내용 반영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축과(☎061-797-3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봉강면 성불로 967
	성명	이백구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886 일원
	면적	약 1,637㎡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식물의 식재
점용기간		당초: 2021. 10. 18.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시 봉강면 비봉길 51-13
	성명	강점숙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634 일원
	면적	약 53㎡
점용목적		공작물 설치
점용내용		단독주택 진출입로
점용기간		당초: 2021. 12. 14.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
입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광 양 시 장

가. 허가내용

하천의 명칭		광양서천(지방하천)
점용자	주소	광양읍 용강 6길 31, 101-1501
	성명	청년문화단체 포유
점용지역	위치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81-2 외 1필지 일원
	면적	약 4,785㎡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점용내용		2026 광양시 구봉산 전망대 백일장 개최
점용기간		2026. 11. 7. ~ 2026. 11. 7.(1일간)

나. 관계도서는 광양시청(건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임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27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다압면 계동1길 23-2	2026. 10. 14.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불임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4.

광 양 시 장



도로명주소 폐지 대상

연 번	업무 구분	도로명주소	건축물대장 말소일 (건축물멸실 확인일)	폐지 고시일	폐지 사유
1	건물번호 폐 지	광양시 계동1길 23-2	무허가건축물 (2026. 10. 8.)	2026. 10. 14.	건축물 멸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및 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4.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및 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백운1로 628-11 외 4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338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1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및 변경 5건					
1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망덕리 212-3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진월면 백운1로 628-11	20261014	20090623	광양시 명산인 백운산에서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2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마동 114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눈소1길 32-6 (마동)	20261014	20111229	마을뒤 산등성이가 소가 누워있는 형국이라는 옛 지명 인용, 일련번호식 부여
3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2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울촌산단3로 172	20261014	20120511	울촌산업단지 명칭 인용 도로명 부여
4	건물번호부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28-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성북안길 20-4	20261014	20100331	성북마을 내를 지나는 도로에서 명명
5	건물번호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광양읍 시장길 16-7	20261014	20081001	광양읍 오일시장 인용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6. 10. 7.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3.(15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210번지 외 4필지	광양시 광양읍 우산리 210, 210-20번지	52.46m	2.5m	72㎡	장○기 류○임 박○혜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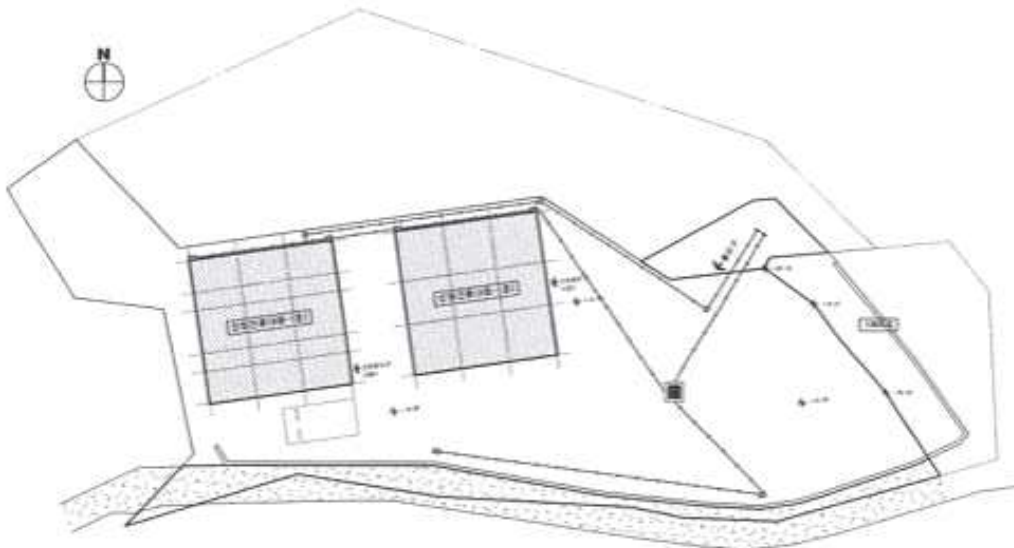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600, [] 1/1,200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 고 제 2026-218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이중진		
	대표자 (성 명)	이중진	주소	광양시 광양읍 와룡길 45, 106동 2001호(남해오네뜨)
소하천명		백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광양시 광양읍 죽림리 1289-13 외 2필지 일원		
	면적	약 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2021. 1. 15.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우수관로 매설)		

열람서류

- 1. 실시설계도서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6. 10. 13.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6. 10. 13. ~ 2026. 10. 27.(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중군동 산 81-7	광양시 중군동 산 81-11	93m	8m	663㎡	(주)대광환경	동의
광양시 중군동 산 81-7	광양시 중군동 산 81-13	8m	8m	58㎡	양해수	동의
광양시 중군동 산 81-7	광양시 중군동 산 81-10	65m	8m	523㎡	조용성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
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
061-797-28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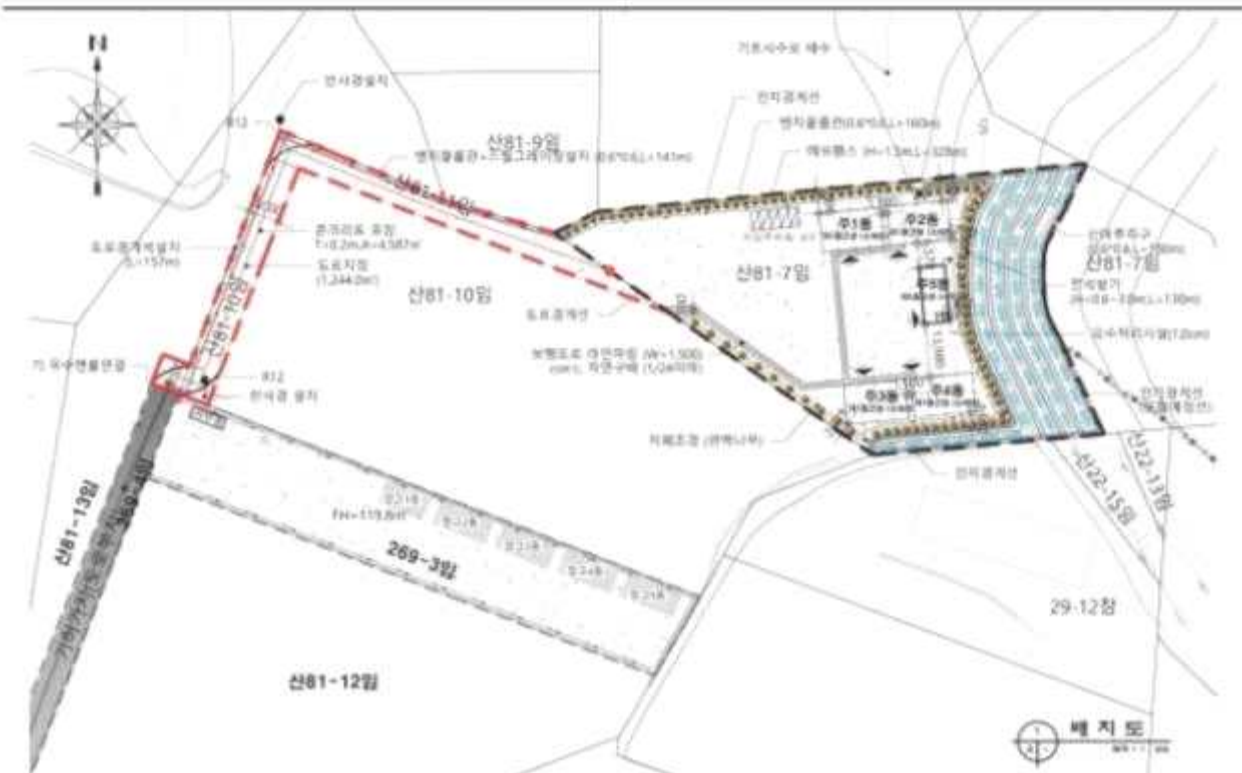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임의>



2026년 3/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공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 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광 양 시 장

1. 공고내용 : 2026년 3/4분기 광양시 임대조건 신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3. ~ 2026. 11. 12.(30일간)
3. 공고장소 : 우리시 공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공고내용 :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조건(붙임 참조). 끝.



2024년 3분기 현대차계약심고 처리현황

[illegible]

- 75 -



- 77 -





[illegible]



- 81 -

















- 90 -



- 91 -



[illegible]

- 95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공 고 제 2026-2199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광 양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박정예		
	대표자 (성 명)	박정예	주소	광양시 옥곡면 백암1길 25
소하천명		백암소하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옥곡면 묵백리 1326 일원		
	면적	약 11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당초: 2021. 2. 9. ~ 2026. 12. 31. 연장: 2027. 1. 1. ~ 2031. 12. 31.		
	목적 및 사유	공작물 설치(단독주택 부지 진출입로)		

열람서류

- 1. 실시설계도서
-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